

충청북도도민교육원조례폐지조례(안)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'96. 12. 6

나. 회부일자 : '96. 12. 7

3. 제안이유

동일구역내 위치한 공무원교육원과 도민교육원을 통합하여 시설장비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도민교육원을 폐지

4. 주요골자

도민교육원을 폐지하고 공무원교육원에 도민교육과 신설

5. 검토의견

충청북도 도민교육원 조례 폐지조례(안)을 검토한 바,

이는 유사기관의 통폐합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, 효율적인 조직 및 기구로 탈바꿈하여 업무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 도민교육원을 폐지하고, 공무원교육원에 도민교육과를 신설하여 기존 도민교육원의 업무를 관장토록 하려는 것임.